

#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8-77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구정 감시 기능 강화 및 구민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ombudsman 확대  
개편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ombudsman 구성의 정수 변경(안 제3조제2항)

- 3명 이내 → 5명 이내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ombudsman의 당연 퇴직 명문화 및 해촉 사유 구체화  
(안 제8조제2호, 제9조제2항)

- ombudsman 운영의 활성화 및 현행 제도 보완을 위한 표준 조례 개정안 적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9. 13. ~ 10. 4.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 개선의견 있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 10. 11.)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6)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으로 한다.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옴부즈만은 <u>3명</u>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 4. (생략)</p> <p>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생략)</p> <p><u>&lt;신설&gt;</u></p> | <p>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성별을 고려하여 5명</u> -----<br/>-----.</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신분보장) -----<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u>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u></p> <p>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u></p>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제2항에 옴부즈만 구성 인원을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개정함
  - 제24조(운영지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수당지급)에 의거, 수당 등을 지원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옴부즈만 수당 지급을 위한 연간 예산이 41,000천원임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감사담당관 정임영    |
| 연락처    | 02-3153-8183 |